

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2. 29.(목) 조간 2022. 12. 28.(수) 12:00	배포 일시	2022. 12. 27. (화)		
담당 부서	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·자원과	책임자	과장	장은섭	(044-202-3210)
			과장	김혜래	(044-202-3250)

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비 특별 지원한다 - 「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」 시행 -

- 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와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, 여성가족부(장관 김현숙)는 최근 이어진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
- 이는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수립·시행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(12.27. 국무회의)에 따른 것이다.
 -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되는 한파·폭설에 대응해서 정부와 지역 사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고 더욱 두텁게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, “관계부처는 취약계층 가구, 쪽방촌 주민, 아동·장애인·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이 난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대책을 마련해 달라”고 지시했다.
-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」을 수립(11.24.)하여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파·대설로 인한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이 과중되지 않도록 지원 중이었으나,
 - 최근 영하 10℃(체감온도 영하 20℃)를 밑도는 지속적인 한파 등으로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졌다.
- 이에,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「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」을 수립하여 12.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- 「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
-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확대를 통해 기존에 지원받던 5만 5400가구에 대해 추가로 54.9억 원이 한시적으로 긴급 추가지원된다.
 - * (현행) 252.74억 원(연탄쿠폰 236억 원 등유바우처 16.74억 원) + (확대) 54.9억 원(연탄쿠폰 37억 원 등유바우처 17.9억 원) = 307.64억 원(연탄쿠폰 273억 원 등유바우처 34.64억 원)
 - (연탄쿠폰 사용가구) 2022년 연탄쿠폰* 지원 5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74,000원(472,000원→546,000원)을 추가로 지원한다(총 37억 원).
 - * (지원대상)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(독거노인, 장애인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)
 - (등유바우처 사용가구) 2022년 등유바우처* 지원 5,400가구에 대해 등유가격 인상율과 평균 등유 사용량인 400리터를 감안하여 가구당 331,000원을 추가로 지원(310,000원→641,000원)한다(총 17.9억 원).
 - * (지원대상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생계·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
 - 추가 지원금액은 수급가구에 기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되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탄·등유 구입 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.

< 연탄쿠폰 및 등유바우처 지원금액 확대 내역 >

구 분	지원가구(가구)	가구당 지원금액(원)		증가액(원)	증가율(%)
		당초	변경		
연탄쿠폰	50,000	472,000	546,000	74,000	15.7
등유바우처	5,400	310,000	641,000	331,000	106.8

- 한파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한다.
 - (사회복지시설)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,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에 난방비 52.9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.
 -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8,526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동절기(1~2월) 운영비 예산을 시설 규모에 따른 난방비를 고려해 시설당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.(총 52.9억 원 규모)
 - * 8,526개소 × 30~100만 원(차등) × 2개월 = 52.9억 원

- 보건복지부는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(12.28)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*에도 유사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고,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를 난방비 수요에 우선 충당하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.

* 노인, 아동, 장애인, 정신, 노숙인 대상 생활·이용시설 및 복지관 등

- (쪽방 거주자) 한파에 특히 취약한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등유와 전기장판을 지원한다(총 4억 원 규모).
- 전국 10개 쪽방 상담소를 통해 수요를 조사한 결과, 등유 4만 2,000 리터와 전기장판 1,200매를 난방 취약가구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.

□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“이번 특별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취약계층이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” 라고 밝히면서, “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추진해 나가겠다.” 라고 말했다.

○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“이번 특별 지원대책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” 라고 하면서, “앞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.” 라고 밝혔다.

○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“가정밖 청소년들과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 등이 한파에도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” 고 하면서, “앞으로도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동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.” 라고 밝혔다.

- 붙임: 1.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(요약)
2. 산업부 에너지 지원사업
3.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내역

담당 부서 <총괄>	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장은섭 (044-202-3210)
<복지시설>	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	책임자	과 장	김혜래 (044-202-3250)
		담당자	사무관	정윤정 (044-202-3258)
<쪽방거주자>	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	책임자	과 장	권혜나 (044-202-3070)
		담당자	사무관	오경희 (044-202-3074)
<등유비우차>	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호성 (044-203-5240)
		담당자	사무관	권정희 (044-203-5253)
<연탄쿠폰>	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	책임자	과 장	임형진 (044-203-5260)
		담당자	사무관	임성균 (044-203-5261)
<복지시설>	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유정미 (02-2100-6061)
		담당자	사무관	류효현 (02-2100-6068)

붙임1

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(요약)

	연탄쿠폰	등유바우처	사회복지시설	(쪽방)등유	(쪽방)전기장판
지원내용	지원단가 7.4만 원 추가 인상	지원단가 33.1만 원 추가 인상	시설 난방비 추가지원	등유 4만 2,000 리터 지원	전기장판 1,200매 지원
대상규모	연탄쿠폰 사용 5만 가구	등유바우처 사용 5,400가구	8,526개소	쪽방거주자 5,500명	
소요예산	37억 원	17.9억 원	52.9억 원 (국비 26.7억 원)	0.6억 원	3.4억 원
재원확보	'22년 실집행 잔액 활용 '23년 예비비 지원(필요시)		선집행 후 이·전용 등 예산 활용	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	
소관	산업부		복지부·여가부	복지부	
전달체계	광해광업공단 ↓ 지자체 ↓ 사용자	에너지공단 ↓ 지자체 ↓ 사용자	복지부·여가부 ↓ 지자체 ↓ 시설	사회복지공동모금회 ↓ 쪽방상담소 ↓ 쪽방거주자	

붙임2

산업부 에너지 지원 사업

구 분	동·하절기 에너지바우처 ¹⁾	등유바우처 ²⁾	연탄쿠폰 ³⁾
사업기간	2015년~계속	2012년~계속	2008년~계속
사업예산	2,034억 원	17억 원	236억 원
지원대상	생계·의료 및 주거·교육(22년한시) 급여 수급가구(중위소득 50% 이하) 中 ■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·희귀·중증난치 질환자, 한부모, 소년소녀가정세대 (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)	생계·의료급여 수급가구(중위소득 40% 이하) 中 ■ 등유 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·소년소녀가정세대 (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)	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■ 기초생활수급자 ■ 차상위계층(고정 재산 고소득 부양가족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된 계층) ■ 소외계층(독거 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정세대 (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))
대상가구	117.6만 가구	0.54만 가구	5만 가구
지원단가	평균 年 18.5만원 *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	年 31만 원	年 47.2만 원

- 1) 에너지바우처 도입이 18대 정부 국정과제(저소득층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)로 포함되어 발표('13.5월)된 이후,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'15년부터 추진
- 2) '07년 고유가로 저소득층 등유사용가구에 난방비 지원을 위해 민간 현물지원사업(정유업계 후원금, 1억원 미만)으로 출범(이후 '12년부터 정부지원(산업부)으로 추진)
- 3) '17년간 동결('89년~'05년)되어오던 연탄가격을 현실화하면서,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동결 전 연탄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'08년부터 추진

붙임3

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내역

□ 지원대상

- 국고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(생활시설, 일부 이용시설), 기타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나 소관법령에 따라 비용이 지원되는 취약시설

□ 지원방식

- 1~2월 난방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되, 지원 금액은 기관 규모별로 차등화
 - ▶ (생활시설) 정원 50명 이하 30만 원 / 51~100명 50만 원 / 100명 초과 100만 원
 - (이용시설) 일괄 30만 원

□ 추가지원액 : 8,526개소 / 5,285백만원 (국고 2,668백만원)

< 시설유형별 소요비용 (복지부) >

(단위:백만 원)

구분			시설유형	시설수	2개월 지원액		비고
					총액	국고	
총계				7,632	4,748	2,398	
사회복지시설	생활 (7개)	소계		1,355	981	550	
		노인	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	20	12	6	
		아동	학대피해아동쉼터	115	69	28	
			공동생활가정	518	311	124	
		장애인	장애인거주시설	618	460	308	
			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	6	4	2	
			학대피해장애인쉼터	19	11	6	
			정신요양시설	59	114	76	
	이용 (5개)	소계		5,594	3,357	1,641	
		아동	지역아동센터	4,180	2,508	1,204	균특회계
			다함께돌봄센터	1,052	631	303	균특회계
			아동보호전문기관	95	57	29	
		장애인	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	17	10	4	
		취약층	지역자활센터	250	150	101	
취약계층 (7개)	소계		683	410	207		
	장애인	발달장애인지원센터	18	11	5		
		보조기기센터	17	10	5		
		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	75	46	23		
	아동	자립지원전담기관	17	10	7		
	노인	치매안심센터	256	153	77	건강기금	
	정신	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	55	33	17		
		정신건강복지센터	245	147	73	건강기금	

< 시설유형별 소요비용 (여가부) >

(단위:백만 원)

구분	시설 유형		시설 수	2개 월 지원액		비 고 (회계구분)
				총액	국비	
총 계			894	536.4	269.7	
생 활 시 설	소 계		346	207.6	104.9	
	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	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	65	39.0	26	양성평등기금
		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	33	19.8	13.9	양성평등기금
	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	성폭력피해자 보호 시설	34	20.4	14	범 죄 피 해 자 보 호 기 금
	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	성매매피해자지원 시설	50	30	1.8	양성평등기금
	청 소 년 복 자 시 설	청소년쉼터	136	81.6	40.8	청소년육성기금
		청소년자립지원관	11	6.6	3.3	청소년육성기금
		청소년회복지원시설	17	10.2	5.1	청소년육성기금
이 용 시 설	소 계		548	328.8	164.8	
	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	여성긴급전화1366	17	10.2	5.1	양성평등기금
		가정폭력상담소	128	76.8	38.5	양성평등기금
		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	9	5.4	2.7	양성평등기금
	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	성폭력피해상담소	105	63	32	범 죄 피 해 자 보 호 기 금
	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	성매매피해상담소	31	18.6	11.5	양성평등기금
		성매매피해자자활 지원센터	13	7.8	4.5	양성평등기금
		성매매피해자대안 교육위탁기관	2	1.2	0.6	양성평등기금
	건강가정·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	가족센터	210	126	60	양성평등기금
		건강가정지원센터	13	7.8	3.9	양성평등기금
		다문화가족지원센터	20	12	6	양성평등기금